

보 고 서

문서번호	공사감독1처-10629	담당	팀장	공사감독1처장	시설안전본부장
보존기간	5년	협 조	주임		
결재일자	2015.11.17.		과장		
공개여부	공개				

제 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(2회,E/S) 검토 보고

1 공사현황

- 가. 공 사 명 : 인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(장기계속)
- 나. 공사기간 : 2013.05.09 ~ 2016.12.31(총차), 2015.02.27 ~ 2015.12.31(3차)
- 다. 공 사 비 : 8,538백만원(총차), 2,660백만원(3차)
- 라. 공사개요 : 총차 : 하수암거(1.5m×1.2m~2.5m×2.7m)개량, L=2,851m
3차 : 하수암거(1.5m×1.2m~2.5m×2.7m, L=711m)
- 마. 도 급 자 : 신성건설(주) 대표 최승규, (주)승영기술공사 대표 김성찬
- 바. 발 주 청 : 송파구청(치수과)

2 보고내용

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사에서 제출한[승영총 제15-74호,2015.10.26]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(2회,E/S) 요청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

1) 계약현황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내용

입찰일	2013.04.22	조정방법	지수조정을 적용
계약금액 (조정기준일)	8,538,000,000원	조 정 을	3.45%(1회) 4.04%(2회)
최초계약일	2013.05.03	조정금액	210,371,000원(1회) 170,764,000원(2회)
조정기준일	2014.01.01(1회) 2015.09.01(2회)		

2) 물가변동(E/S) 검토사항

□ 조정기준 검토

- ▶ 계약금액 조정방법 : 지수조정율(계약서에 명시)
- ▶ 조정기준일 검토

구 분	내 용	
조정횟수	1회	2회
직전조정일(기준시점)	2013.04.22	2014.01.01
조정기준일(비교시점)	2014.01.01	2015.09.01
경과기간	242일	607일
조 정 율	3.45%	4.04%

※ 계약일 이후 90일이 경과하고 기준시점(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)대비 지수조정율이 3%이상 상승하였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기준 충족

□ 물가변동 적용대가 검토

- ▶ 공정율 검토 ... 높은쪽을 반영하여 적용 제외금액 산정
 - 예정공정율 : 43.56%
 - 실시공정율 : 46.42%
 - 기성수급율 : 42.09% ⇒ 적용제외(1차~2차준공, 3회기성)
 - 적 용 율 : 48.65%(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적용하였을 때 제외금액이 높은쪽 반영)
- ▶ 선급금 공제 검토(조정기준일 이전 수령한 선급금 공제) : 선급금 미신청

□ 조정내용 ... 2회조정(2014.01.01~2015.09.01)

구 분	적용금액(원)	비 고
①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(B)	8,538,000,000	조정기준일 기준
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(C)	4,311,120,000	1차+2차준공+3차(금차)기성분
③ 물가변동 적용대가(D)	4,226,880,000	D=B-C (최종 정산시 변경적용)
④ 물가변동 조정율(A)	4.04%	
⑤ 물가변동등락 대상조정금액(E)	170,764,000	E=A×D (최종 정산시 변경적용)
⑥ 선급금 공제금액(F)	-	미신청
⑦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(G)	170,764,000	G=E-F (최종 정산시 변경적용)

□ 비목군별 지수적용 적정성 검토

- ▶ 노무비지수 산정 검토
 -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직종별 노임의 평균치를 적용 ⇒ **적정**
- ▶ 기계경비지수 산정 검토
 -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품셈상 건설기계가격표상의 시간당손료 평균치 적용 ⇒ **적정**
- ▶ 재료비지수 산정 검토
 -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 ⇒ **적정**
- ▶ 제경비지수 산정 검토
 -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제비율 검토 ⇒ **적정**

3) 검토의견

- 직전조정일(2014.01.01)로부터 조정기준일(2015.09.01)까지 90일 이상 경과 하였으며(607일경과)
- 직전조정일(2014.01.01)로부터 산출된 지수조정율(K)이 3%이상으로 조정 요건에 충족함(4.04%)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73조,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3』 과 관련하여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
3 행정사항

- 계약금액조정 산출서 심의완료
- 위 사항의 검토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조치 결과에 따라 추후 설계 변경에 반영코자 함

따로붙임 : 1)심의결과 조치의견서 1부

2)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내역 및 산출근거 1부. 끝.